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4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9월 28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4조제1항에서 “공유재산심의회”를 “심의회”로 약칭한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통일되게 적용하고,
 -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이 서울특별시 재정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,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,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 범위를 현행대로 ‘20억원 이상’으로 유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1) “공유재산심의회”를 “심의회”로 약칭한 사항의 반영(안 제11조제1항)
- 2)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가격 범위 현행 유지(안 제11조제2항)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1항 중 “공유재산심의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한다.

안 제11조제2항제1호 가목과 나목 중 “40억원”을 “20억원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</p> <p>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</p> <p>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<u>공유재산심의회</u>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취득의 경우: <u>40억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처분의 경우: <u>40억원</u></p> <p>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</p>	<p>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</p> <p>① ----- <u>심의회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----- <u>20억원</u></p> <p>나. ----- <u>20억원</u>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천제곱미터</p> <p>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</p> <p>③ (현행 2항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 3항과 같음)</p>	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을 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, 제4항제2호, 제5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각각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제1호 중 “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는 때”를 “사용을 허가하려는 때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제1호 중 “5억원 이상인 재산”을 “5억원 이상인 재산(단, 연접하거나 동일한 사업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장가격을 합산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영 제7조의2제1항제3호”를 “영 제10조의3”으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”

같은 조 제4항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항 단서는 삭제한다.

-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
2.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
3.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
4.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
5.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 - 나.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
 - 다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·용도·위치가 변경된 경우(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 - 라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 - 마.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
 - 바.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제1항 중 “공유재산심의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하고,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
 - 나. 처분의 경우: 2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

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무상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무상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을 “사용허가의 제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8조의2의 제목 및 본문,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각각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을 “사용허가부의 비치”로 하고, 본문 중 “사용·수익허가부”를 “사용허가부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각각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사용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영 제35조에 따라”를 “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고, 제4항 중 “법 제34조제2항에 따라”를 “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”로 하고, 제5항 중 “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”를 “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”로 하며,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제33조제1항 중 “납부기간”을 “납부기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제3호는 삭제한다.

1.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
2. 200만원 초과: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

제33조제3항 제2호 중 “3회”를 “4회”로 하고, 제3호 중 “9개월 이내 4회”를 “10개월 이내 6회”로 한다.

제38조제1호 및 제4호 중 “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”을 “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 (단, 「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.)”로 한다.

제39조의2제1항 중 “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부료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납기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시유재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.

현행	개정안
<p>2.~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 <u>대장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는 때</u></p> <p>2.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의 대부 또는 <u>사용·수익허가</u>에 대하여 자기계약하려는 때</p> <p>3. (생략)</p> <p>⑤ 제1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또는 용도이외로 <u>사용·수익허가</u>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(자기계약으로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.)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<u>영 제7조의2제1항제3호</u>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민간위원</p>	<p>2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5억원 이상인 재산(단, 연접하거나 동일한 사업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장가격을 합산한다)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-----</u></p> <p>2.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의 대부 또는 <u>사용허가</u>에 대하여 자기계약하려는 때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1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또는 용도이외로 <u>사용허가</u>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(자기계약으로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.)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<u>영 제10조의3</u>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민간위원 자격요건</p>

현행	개정안
<p>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1.~4. (생략) ② ~ ③ (생략)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<u>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<u>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</u> 2. <u>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</u> 3. <u>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</u> 4. <u>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</u> 5. <u>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</u></p>	<p>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<u>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심의회는 <u>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p>1. <u>법 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</u> 2. <u>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</u> 3. <u>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</u> 4. <u>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</u> 5. <u>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.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(변경계획을 포함한다)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. 다만,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</p>	<p>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<u>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나. 처분의 경우: 20억원</p> <p>2. <u>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</p> <p>③ (현행 2항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시,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.</p> <p>제15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</p> <p>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<u>무상사용·수익허가</u>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,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.</p> <p>제18조(<u>사용·수익허가</u>의 제한)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<u>사용·수익허가</u>하여서는</p>	<p>④ (현행 3항과 같음)</p> <p>제15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무상사용허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<u>사용허가</u>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사용허가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아니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제18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<u>사용·수익허가</u> 대상) 영 제13조 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<u>사용·수익허가</u>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제19조(<u>사용·수익허가</u>) 행정재산을 <u>사용·수익허가</u>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사용·수익허가</u> 재산의 보존 의무</p> <p>6. <u>사용·수익허가</u>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20조(<u>사용·수익 허가부</u>의 비치)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<u>사용·수익 허가부</u>를 갖추어 두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</p>	<p>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<u>사용허가</u> 대상) ----- ----- -- <u>사용허가</u>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<u>사용허가</u>) ----- <u>사용허가</u>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사용허가</u> -----</p> <p>6. <u>사용허가</u> ----- --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<u>사용허가부</u>의 비치) ---- ----- -- <u>사용허가부</u>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.</p> 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 제3항 및 <u>영 제35조에 따라</u>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②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<u>사용·수익허가</u>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·연구시설에 대하여 <u>법 제34조제2항에 따라</u>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p>	<p>----- -----.</p> 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--- ----- ----- <u>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3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용허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해당하는 경우 <u>영 제17조제7항제1호</u> 및 <u>영 제35조제2항제1호</u>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제33조(대부료의 납기) ① 공유 재산 대부료의 <u>납부기간</u>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, 1년 초과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.</p> <p>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<u>영 제32조제2항</u>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삭제 <2011.7.28></u></p>	<p>----- <u>영 제17조제7항제2호</u> 및 <u>영 제35조제2항제2호</u>에 따라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</u> 및 <u>영 제35조제2항제1호</u>에 따라 <u>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33조(대부료의 납기) ① ----- ----- <u>납부기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2. <u>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</u></p> <p>3. <u>200만원 초과 :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</u></p> <p>③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: 6개월 이내 <u>3회</u> 범위에서 분납</p> <p>3. 100만원 초과 : <u>9개월 이내 4회</u> 범위에서 분납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38조(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<u>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</u>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특별시·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,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, 광역시·시·군의 읍·면</p>	<p>2. <u>200만원 초과: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</u></p> <p>3. <삭제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: 6개월 이내 <u>4회</u> 범위에서 분납</p> <p>3. 100만원 초과: <u>10개월 이내 6회</u> 범위에서 분납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8조(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</u> (단, 「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효력기간 내에 <u>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.</u>)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.</p> <p>5.~10. (생략)</p> <p>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」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~⑦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 <p>5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① ----- <u>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</u> <u>되,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.</u></p> <p>②~⑦ (현행과 같음)</p>